

경산시와 대구대학교간의 건강증진대학 만들기

업무협약서

경산시와 대구대학교(이하 “양 당사자” 라 한다)는 『건강증진대학 만들기』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『건강증진대학 만들기』추진을 위해 양 당사자 간 상호 협력·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 및 지원)

양 당사자는 『건강증진대학 만들기』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 및 지원한다.

1. 안전하고 건강한 캠퍼스 환경조성
2. 교직원 및 학생들을 위한 건강증진 “DU 건강프로젝트” 운영
3. 건강증진관련 교양 교과목 개설 운영
4. 교직원 및 학생들의 지역사회 자원봉사
5. 기타 양 기관의 건강증진 관련 사업에 대한 상호 지원 및 협조

제3조(역할)

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한다.

경산시

1. 안전하고 건강한 캠퍼스 환경조성 지원
2. 교직원 및 학생들을 위한 건강증진 “DU 건강프로젝트” 운영 지원
3. 학생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기회 제공
4. 기타 대학의 건강증진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조

대구대학교

1. 안전하고 건강한 캠퍼스 환경조성
2. 교직원 및 학생들을 위한 건강증진 “DU 건강프로젝트” 적극 참여
3. 건강증진관련 교양교과목 개설 운영
4. 기타 경산시의 건강증진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조

제4조 (신의성실)

양 당사자는 본 협약서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.

제5조 (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)

양 당사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보호한다.

제6조 (협약기간)

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한 날로부터 2016년 12월까지로 하며 상호 합의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 (협약해지)

협약 당사자가 본 협약을 위배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해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 (협약서 보관)

본 협약을 보증하고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기관장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4년 4월 23일



대구대학교 총장직무대행
부총장 김 덕 진

김 덕진



경 산 시
시 장 최 영 조

최영조